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군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내용 삭제(안 제12조)
○ 군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사유 변경(안 제19조)
○ 보조금 반환 사유 삭제(안 제26조)
○ 상위법령 준용 조항 삭제(안 제2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 및 제40조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0조의3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8304(2018. 10. 19.)〕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8086(2018. 10. 19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군립어린이집 우선 설치규정, 비용 및 보조금 반환규정을 삭제하고, 기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